2020년도 제27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0년 12월 24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지원 위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52호 -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12월 10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 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급증하고 자산가격 상승압력이 증대되는 등 금융불균형 심화 우려가 높아졌으므로 이에 대한 조기경보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당행의 의견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종합평가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청년층의 레버리지(leverage) 확대가 소비 제약을 초래하는 등 거시경제 측면의 리스크(risk)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유동성 부족 상태인 자영업자 가구와 상환불능 상태인 자영업자 가구를 어떻게 구분하여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면서,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유동성 부족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취약기업에 대한 여신현황과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우회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과소 반영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금융안정 현안 분석 중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를 보다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 상승 시 DSR의 악화 정도를 추정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가계부채DB 상 소득 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2020년중 차입금 증감액에서 2019년중 차입금 증감액을 차감하여 금융지원금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 지원금 규모가 과다계상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에서 사용한 금융불균형 조정이라는 개념이 실물경제 상황에 조응하여 금융시장의 가격변수가 조정되는 비관적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의 현실 적합도를 높이는 데 계속 노 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안)(생략)

<의안 제53호 -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두 차례(12월 14일, 12월 21일)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에 적의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국의 통화정책방향은 당행의 통화정책 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던 만큼, 내년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금년보다 축소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는 큰 수준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여러 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최근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들은 경기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의도하지 않은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커뮤니케 이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부분에서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과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함께 명시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외에도 일부 위원은 지급결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당행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당행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금 융안정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과거 BIS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부채함정(debt-trap)이라고 표현하면서 경고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경제주체의 부채,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정책들이나 조치들이 향후 정상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도 유념하면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지난 1년간은 통화신용정책의 주안점이 경기급락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기하는 데 두어졌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를 계기로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의 안정을 위한 당행의 고민과 노력이 외부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생략)

<의안 제54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안)><의안 제55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1조제2항, 제28조제9호 및 제80조에 의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용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해 대출실행 시한을 연장하고 대출부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아울러 이에 따라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해 12월 3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모든 위원들은 최근 우량등급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 상황이 개선된 반면 비우량등급의 경우 회복이 지연되면서 높은 신용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 등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므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점을 고려할 때 SPV의 매입기간 연장은 회사채 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또한 모든 위원들은 비우량등급 기업이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비우량등급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SPV 포트폴리오의 신용 등급별 비중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우량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매입수요 확대 등으로 SPV가 우량등급 회사채를 투자계획대로 매입하기 어려워진 반면 비우량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경계감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SPV의 신용등급별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음. 구체적으로는 AA등급 비중을 종전 '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5%p 하향 조정하는 대신 BBB등급 이하 비중을 종전 '15% 이하'에서 '20% 이하'로 5%p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회사채·CP 매입기구의 운영성과, 회사채·CP 시장의 중개기능 회복 정도, 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SPV 운영의 출구전략 계획을 미리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동 매입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불임>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안)(생략)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안)(생략)

<의안 제56호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제7호 및 제69조,「한국은행 통화안 정증권법」제2조에 의거 유동성조절 필요규모의 추세적 감소 전망 등을 감안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의결주기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11월 30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통안증권 발행한도 의결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방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최근 당행의 정책 스탠스(stance)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변경이 자칫 유동성 조절 필요성의 약화나 금융시장에 대한 당행의 정책적 대응 의지의 변화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2016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향후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따라 발행한도 설정 의결주기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당행의 정책 스탠스의 변화와는 무관하며 실무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는 점을 시장참가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다른 일부 위원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행한도 의결주기를 6개월로 확대하더라도 발행한도의 설정은 현행 분기 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금통위의 실질적인 통제력 유지 및 발행한도 관리의 유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발행한도 의결주기를 확대하면서 한도 잔액도 6개월 단위로 설정·관리할 경우 통제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유동성조절 필요규모를 예측함에 있어 명절 요인 등 분기별 지준공급 변동요인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발행한도의 설정은 현행 3개월 단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당초 발행한도 의결주기와 발행한도 설정을 6개월 단위로 일괄 변경하는 쪽으로 생각하였으나, 일괄 변경 시 시장에 불필요한 노이

즈(noise)를 유발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통안증권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의 설정은 종전과 같이 3개월 단위로 하는 절충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앞으로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및 통안 증권 발행잔액이 감소세를 지속할 경우 발행한도의 설정도 6개월 단위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생략)